

생활과학연구소규정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경희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함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사업) 연구소는 의・체・주 및 가족의 생활환경에 관련하여 인간 생활수준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의・체・주 및 가족의 생활환경에 관한 연구 사업
2. 의・체・주 및 가족의 생활환경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・보급
3. 의・체・주 및 가족생활에 대한 재교육 사업
4. 산학연 협동 및 국제협력사업
5. 학술활동의 활성화 사업
6. 출판물 간행사업
7.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필요한 사업

제 3 조 (직제) ① 연구소에는 소장, 부장, 연구위원을 둔다.

② 소장, 부장, 연구위원 및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 4 조 (기구) ① 연구소에는 연구부, 상담활동부, 서무실, 운영위원회를 조직한다.

- ② 연구부는 연구사업과 학술활동의 활성화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- ③ 상담활동부는 상담사업 및 상담프로그램의 개발, 재교육 및 위탁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- ④ 서무실은 서무・회계와 다른 부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담당한다.

제 5 조 (소장)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통괄한다

② 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가정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.

제 6 조 (부장) ① 연구부와 상담활동부에는 각 1인의 부장을 둔다.

- ② 부장은 연구소의 연구위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
- ③ 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속 부의 업무를 수행한다.

제 7 조 (연구위원) ① 연구소에는 연구위원을 둔다.

②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본교 시강강사중에서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.

제 8 조 (운영위원회)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(이하 위원회 라 함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를 소장과 가정대학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본교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.
- ③ 소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소의 운영계획 및 연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
2.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
3.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4.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5. 본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
6. 연구위원 임명에 관한 사항
7.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 9 조 (사업계획) 소장은 연구소의 연간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년도 개시 1개월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0조 (사업보고 및 결산서) 소장은 연구소의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보고서, 결산서를 작성하되 해당사업계획서, 예산서와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년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1조 (재정) 연구소의 재정은 수탁연구비, 찬조금 또는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12조 (운영세칙)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.